

II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종합대책

1 연 황

- '13년 소음민원 27,558건으로 지난 5년간 73% 증가
 - 15,922건('09년) → 21,745건('11년) → 27,558건('13년)
- '10년 ~ '13년까지 환경분쟁조정사건 368건중 소음피해 관련 분쟁이 363건으로 98.6% 차지
- 낮시간대 소음도는 환경 기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, 밤시간대는 대부분의 지역이 환경기준 초과
- 녹지 및 전용주거지역 등은 일반과 도로변지역 등에서 모두 소음환경기준 초과

〈 서울의 용도지역별 소음 현황 〉

구 분	적 용 대상지역	환경기준(dB(A))		평균소음도(dB(A))	
		낮	밤	낮	밤
일 반 지 역	녹지 및 전용주거지역 등	50	40	51.8	48.5
	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등	55	45	53.3	46.8
	상업 및 준공업지역 등	65	55	62.5	58.3
도 로 변 지 역	녹지, 전용주거, 일반주거, 준주거지역 등	65	55	66.8	64.5
	상업 및 준공업지역 등	70	60	70.3	68.3

※ 시간대 구분(환경정책기본법) : 06:00~22:00(낮), 22:00~06:00(밤)

소음측정 현황

- 소음 자동측정망(도로변 4개 지점)과 수동측정망(15개 지역 75지점) 운영,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

소음 배출원

구 분		소 음 배 출 원	관련법규
생활소음	공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1만m^2이상 건축·토목건설 공사장 350여개소 ◦ 1만m^2미만~1천m^2이상 공사장 1,190여개소 ◦ 1천m^2미만 비신고대상 공사장 (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마포구, 성북구 등 전 자치구) 	소음진동 관리법
	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노래연습장, 유흥(단란)주점, 체력단련장, 무도장, 무도학원,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등 약 3만여개 	(주택법)
	확성기 (이동소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화장품, 휴대폰, 가전제품 영업점 등의 스피커 ◦ 자동차·이륜차 장착 불법 스피커·소음기 등 (중구, 마포구, 서대문구 등 상업중심지 일대) 	
	층간소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동주택 약 267만 세대 	
공장소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물품제조 기계·장치가 있는 금속, 인쇄, 섬유 등 공장 484개소(허가 169, 신고 315) (성동구, 동대문구, 도봉구, 금천구, 영등포구 일대) 	소음진동 관리법
교통소음	도로소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주행차량의 엔진음, 타이어 마찰음, 배기음, 경적음, 구동계 소음 등으로 다양 (성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마포구 등 자동차전용도로 일대) 	소음진동 관리법
	철도소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차륜과 레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동소음, 구동장치 소음, 높은 운행속도로 인한 공력소음 등 (동대문구 이문동, 성북구 석관동, 구로구 등 일대) 	
항공기 소음 (국토교통부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김포국제공항, 한국항공대, 군 공항 등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(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마포구 일대) 	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
기 타 소 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집회시 확성기 소음 ◦ 인근 소란(동물 및 사람 소리) 	집·시·법 경범죄처벌법

2

문 제 점

- 공사장소음이 생활소음 민원의 79.1%로 획기적 개선 필요
 - 사업자와 피해자간 대립 발생,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
- 교통소음에 대한 과학적·체계적 관리 미흡
 - 도로 및 차량증가,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건설 증가 등으로 교통소음 피해 증가
 - 체계적인 교통소음관리 정책 미흡으로 민원 발생 후 방음벽 및 저소음도로 포장 등 소극적 처리
- 중소기업의 공장·사업장, 이동소음 관리 어려움
 -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금속, 인쇄, 섬유 등 공장 등에 대한 소음관리 지원 시스템 부족
 - 확성기,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 등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 대책 부족
- 소음저감을 위한 사전예방제도 기반·관리 부족
 - 소음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- 소음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적·체계적인 조사연구 미흡
 - 건강에 미치는 객관적·주관적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료 부족
 - 소음노출인구의 조사부족으로 통계자료 등 정책수립 자료 부족

3

추진목표 및 전략

① 비전체계

비전

자연과 생활환경이 함께 어울리는
조용한 환경도시 서울!

정책목표

조용한 환경도시 서울“소음 3, 30, 300 프로젝트!!!”

- 생활소음도 3dB(A) 감축, 서울전역 낮시간대 소음기준 달성
- 소음 민원발생 30% 감축 (27,558건 → 19,000건)
- 조용한 마을, 정온한 휴식공간 300개소 조성
- 시민참여 실천문화 창출 (캠페인, 교육 강화)

추진전략

민원발생 감축

- ▶ 대형공사장 소음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강화
- ▶ 교통소음지도 제작으로 효율적·체계적 소음관리 강화
- ▶ 소형공사장, 사업장 소음진동 진단 및 컨설팅 추진

소음관리 제도개선

- ▶ 소음관리 협업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
- ▶ 정온한 도시관리를 위한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소음 관리 강화
- ▶ 서울형 소음관리 기준 제도화, 조용한 마을 만들기 추진

사전예방 연구강화

- ▶ 소음관리 최적 모델 개발 및 개선으로 조용한 서울 조성
- ▶ 사전 예방적·계획적 관리 방식 전환으로 소음 관리 강화
- ▶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방안 마련 강화

시민실천 운동전개

- ▶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
- ▶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작성·배포, 서울 소음종합 홈페이지 구축
- ▶ ‘환이랑 경이랑’ 등 환경교재 이용 학생대상 소음교육 강화

4

사업별 추진계획

① 공사장소음 관리

◆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로 소음사전예방 추진

□ 현 황

- 24시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25대 설치·운영
- 공사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확대 및 의무화
 -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('15년)
 - 소음측정시스템 단계별 의무화 : 공공부문 ⇒ 민간부문으로 확대
 - 공공 : 4대문안 1만㎡이상 공사장('16) → 1만㎡이상 전체 공사장('17)
 - 민간 : 4대문안 1만㎡이상 공사장('17) → 1만㎡이상 전체 공사장('18)
 - ※ 공사장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병행 추진
 - 25대('14년) → 50대('16년)
- 소음 이동측정차량 증차 : 4대('14년) → 6대('16년)

◆ 공사장 공중·장비별 소음 저감대책 강화

□ 추진계획

- 공사장 소음저감 우수사례 교육 및 보급('15년)
 -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, 한국건설환경협회, 대한건설협회 등 협조
- 공사장 소음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
 - 대형공사장 공사 사전신고시 소음저감시설 설치 권고('15년)
 -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음장비 사용 등 의무화('16년)

《 공중별 소음저감 방안 》

- 기 초 공 사 : 에어메트 방음벽(7~10dB 저감), 소음차단 커튼(3~4dB 저감)
파일항타 작업시 고무받침대 사용(3~6dB 저감)
- 파괴·해체공사 : 브레이커 철거공법 대신 압쇄기 작업 (15dB 저감)
매직판넬 사용시(13dB 저감)
- 기 타 공 사 : 방음판넬 설치 및 흡방음 4중 커튼 사용시(6~14dB 저감)

◆ 공사장 소음 사전억제 및 이행력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공사장 소음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낮아 규제기준 준수를 낮음 (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)
 -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: 1차 60만원, 2차 120만원, 3차 200만원
 -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: 1차 20만원, 2차 60만원, 3차 100만원
- 단속 어려운 취약시간대(새벽, 야간) 및 공휴일(토·일요일) 민원 빈발

□ 추진계획

- 신고대상 공사장 : 방음벽 설치기준 강화
 - 소음 발생 장비 사용시 공기주입형 이동식방음벽, 매직판넬 등 사용
- 비신고대상(1천㎡ 이하)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
 - 건축허가·착공신고 단계별 공사소음 저감방안 조건 부여 관리
- 공사 착공시 주민설명회 개최로 사전 민원발생 예방 및 소통의 장 마련
 - 착공시 주민이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토록 참여 유도
 - ⇒ 소음관리사항 미이행시 조건 이행시까지 작업 제한
- 우수 공사장 (사)한국건설환경협회와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 추진
- 소음기준 초과 발생시 과태료 벌금 방음시설·장비 비용대비 상향 추진

구 분	현 행	⇒ 2018년
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초과 (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인 경우)	60~200만원	상향조정
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초과 (특정공사 사전신고 외의 공사)	20~100만원	상향조정

- 과태료 인상범위는 전문가의 연구용역과 시민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출

② 교통소음 관리 (도로·철도)

◆ 서울전역 교통소음지도 제작 및 활용

□ 교통소음지도 제작('15년~'16년)

- 2단계에 걸쳐 25개 전 자치구 지도 제작(국시비 50:50)
 - 1차년도 '15년 6개구(5억원), 2차년도 '16년 19개구(15억원)
- GIS, 소음원 등 DB와 연동프로그램 포함 입체지도 제작
 - 지도·토지이용 자료, 교통망, 교통량, 속도, 인구, 건물 등 자료 연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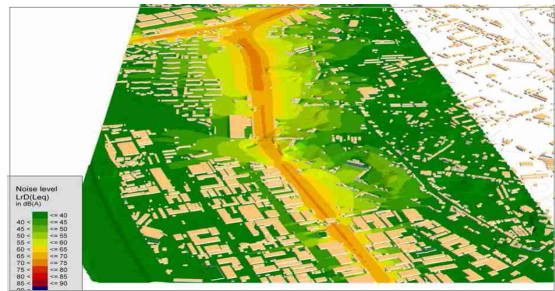
□ 교통소음지도 활용

- '15년 교통소음관리 시범지역 지정, '16년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및 확대 추진
- 도시계획, 재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건축물 배치(직각, 일정 층수이하 건축) 등 사전예방 대책 수립
- 저소음포장 도로 확충, 속도제한구역 지정, 방음시설 설치 등 지역실정 및 경제성에 맞는 사후 교통소음 대책 수립

◆ 교통소음지도 시범제작 사례(국립환경과학원 '08.9~'09.9)

▶ 서초구 도로교통 소음지도

▶ 구로구 철도 소음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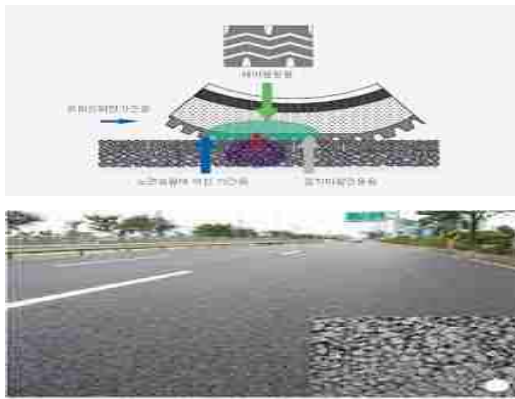
해 외 사 례

- ◆ EU는 '06년부터 인구 25만, 교통량 6백만대/년(철도 6만대/년, 항공기 5만대/년)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
- ◆ 소음지도 활용 5년간 소음저감 실행계획(Noise Action Plan) 작성·추진

◆ 교통소음 방지시설(저소음도로 포장, 방음벽 등) 개선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저소음도로 포장 161개소 145.8km, 방음벽 433개소 164.1km
- 교통소음 방지시설은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나 효과 미흡
 - 차량 종류, 속도 및 통행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설치
 - 방음벽은 건축물의 고층화로 소음저감 효과 미흡
 - 저소음노면 포장은 먼지 등으로 공극이 막혀 효과 감소



저소음도로 포장



벽면녹화 병행 방음벽

□ 추진계획

- 방음벽, 방음터널, 저소음도로 포장 등 방음시설 성능향상 기술개발
 - 녹색기술 연구개발(GT R&D)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
- 도로변 신규·재건축시 소음원과 이격거리 확보, 건물 방음화 조치 이행 강화
- 방음벽에 벽면녹화 병행, 도시미관 개선 및 CO₂ 배출 감소

◆ 교통소음 관리지역 시범지정 및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내 주요도시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은 미지정
 - 인천, 광주, 대전 등 12개 시·도 478개소, 879km 관리지역 지정
- 방지시설(방음벽 등)만으로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어 운행차 차량속도 제한 등 교통량 관리정책 도입 필요

《소음개선방안 연구 (시립대)》

- ◆ 교통량 반감시 약 3dB(A) 감소, 주행속도(60 → 50km/h) 감속시 약 1dB(A) 감소

□ 추진계획

- 교통소음 관리 시범지역 지정('15)
 - 도심구간, 철도구간 등 각 1개소
- '16년 교통소음지도 제작 완료 후 교통소음관리구역 지정 확대



□ 지정효과

- 관리지역 지정시 방음시설 우선 설치, 교통량 관리 등 규제기준 이내 소음관리

③ 공장·사업장·이동소음 관리

공장·사업장 소음·진동 특별관리 추진

현황 및 실태

- **공장 소음진동배출시설 484개소 (허가 169개소, 신고 315개소)**
 - '13년도 소음민원 발생 76건

추진계획

- **효율성 있는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로 민원발생 Zero화 추진**
 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무단변경,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 지도점검 수시 실시로 민원 사전예방
 - 민원 발생 사업장 점검 강화(연 1회 → 2회)
- **소음기준 및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시 신속한 시정 조치**
 - 개선기간 최소화 및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보완 유도
 - 기준초과시 개선명령 및 미이행시 조업정지
- **인허가 부서와 협업적 관리체계 강화로 사업장 소음발생 예방 및 방음시설 강화**
 - 사업장 시설 인·허가시 방음시설 확보 및 소음발생 저감 컨설팅 추진
- **민원다발지역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집중 활동으로 사업장 관리 강화**

◆ 이동소음원 및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13년 이동소음원(확성기, 음향기계 및 기구,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차) 901건 단속하였으나 기동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

- 845건('09) ⇨ 918건('10) ⇨ 724건('11) ⇨ 685건('12) ⇨ 901건('13)
 - ▶ 과태료 부과 : '10년 6건 45만원, '11년 1건 10만원, '12년 5건 50만원

□ 추진계획

-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강화

- 이동소음에 대한 경찰청과 협업, 지도·단속 강화
- 기업형 확성기 사용 및 소음발생 영업행위 근절 추진

-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저감 방안 마련

- 소음저감 안내 등 제도 및 자발적 참여 유도
- 이동차량 확성기 소리를 시운드스케이프(Soundscape)로 활용하는 방안 추진
 - ▶ 시냇물·새·파도·폭포소리 등 자연의 소리로 전환



〈이륜자동차 소음〉



〈이동차량 확성기〉



〈자연의 소리로 전환〉

④ 신규 소음원 및 생활공간소음 관리

◆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육성 및 사회적 기업화 유도

□ 추진계획

○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증원 배치 : 10명('14년) ⇨ 20명('15년)

- 소음중심에서 소음·악취·빛공해 등 시민불편해소로 범위 확대
-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및 조사, 점검, 민원상담, 컨설팅 등
- 명동 등 내외국인의 활동이 많은 시민생활불편 현장중심으로 (화장품, 휴대폰 대리점 등) 집중 지도·점검(3~10월)

○ 민간 일자리로 연계

-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·한국환경공단 등 협업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 및 소음전문가 양성
- 환경관련 컨설팅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 등 설립 유도

'14년 소음민원해결사 주요 운영성과

- ◆ 신촌 등 소음과잉발생사업장 등 약 7,024개소 소음민원 청취, 소음 발생 예방 홍보, 컨설팅 실시
- ◆ 22개구 66개 전체 셀프세차장 소음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소음민원 사전 예방



〈홍대 휴대폰 판매소〉



〈명동 소음측정〉



〈소음민원해결사 교육〉

◆ 층간소음관리 강화로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

□ 추진방향

- 주민 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확대
- 자치구, 유관기관 등의 층간소음 관리역량 결집으로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 추진
- 해결방안 공유, 예방교육 등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확산
-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이웃간 분쟁 해결방안 강구

□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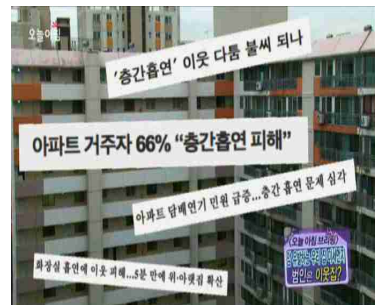
-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 : 20명(분야별 전문가, 실무전문가)
 - 층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, 층간소음 예방교육
 - 주민자율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반 자문, 민원 청취 및 조사 등
-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
 - ‘120 다산콜센터’와 연계 층간소음 발생 민원 신속 처리
 - 공동주택상담실(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) 내 전담인력 상담기능 강화
-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시민의식 개선 확산 및 홍보강화
 -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추진
 - 컨설팅단, 커뮤니티전문가, 시 녹색환경센터를 활용한 주민교육 강화



〈층간소음예방 교육〉



〈층간소음줄이기〉



〈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만들기〉

⑤ 사전예방제도 기반·관리 강화

◆ 정온시설 설치시 입지관리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정온을 요하는 시설(학교, 도서관, 병원, 영유아보육시설, 공동주택 등)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변 소음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 장치 미흡
 - 정온시설 설치 이후 운용단계에서 소음진동 민원 및 분쟁 발생

□ 추진계획

-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시 서울시 소음진동 세부 규정 강화
 - 정온시설 입지시 주변 소음 검토 규정 마련 추진
 - 정온시설 설치 및 운영자에게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방지 의무 부과
- (사)한국건설환경협회,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등과 공동으로 공사장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교육 공동 추진

◆ 서울형 소음관리 기준의 조례화 추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앙정부에서 소음·진동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

해외사례 (일본, 오사카)

- ◆ 중앙정부에서는 소음진동규제기준의 범위만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

구 분	낮	아침·저녁	밤
특별히 정온을 요하는 지역	45~50(50)	40~45(45)	40~45(40)
전용주거지역	50~60(55)	45~50(50)	45~50(45)
상업·준공업·일반주거지역	60~65(65)	55~65(60)	50~55(55)
전용공업지역	65~70(65)	60~70(60)	55~65(55)

□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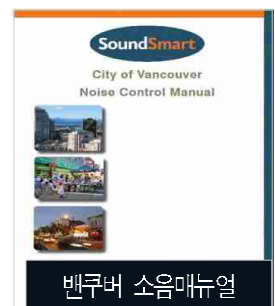
- 중앙정부는 소음·진동 규제기준의 범위만 정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기준 조례 추진
 - 환경부에서 소음진동 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예정('15)
- 소음관리 기준 조례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'16)
 - 서울형 소음관리 기준 제시
 - 소음관리 시범지구 지정,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육성, 정온한 마을 조성 등 근거 마련

⑥ 조사·연구 강화

◆ 발생원별 소음관리 매뉴얼 제작

□ 추진계획

- 발생원별 도시소음 관리 매뉴얼 제작 추진('15년)
 - 벤쿠버시 등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
 - 소음 발생원·유형별 저감방안 및 시민실천방법 등 제시
 - 전문가, 시민단체 등 참여하는 생활속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등
- 매뉴얼을 활용한 소음저감 실천방안 시행('16년)
 - 대시민 소음줄이기 프로그램 운영, 캠페인 전개
 - 중소 기업인, 일반시민, 학생 등 소음저감 교육 실시



◆ 소음·진동 분쟁 피해배상금액 현실화 추진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피해배상 금액이 낮아 사회적 비용 증가
 -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78건 중 배상결정이 난 건은 44건, 이중 77%에 해당하는 34건이 5백만원 미만의 소액배상 사건
 -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음·방진시설 비용보다 피해배상 금액이 낮아 소음진동 유발시설 업체의 소음진동 피해방지 의지 미약
 - 소음진동 피해방지 노력 저하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및 민원분쟁 증가로 사회적 비용 증가

□ 개선방향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배상 금액 상향 검토 연구
- 배상액 상향 조정으로 소음진동 유발업체의 피해방지 노력 강화

⑦ 교육·홍보 및 파트너십 강화

◆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및 홍보

- ◆ 시민과 함께 온·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생활소음 줄이기 홍보 전개
 - 소음피해 사전예방, 갈등해소, 민원발생 '18년까지 30% 이상 저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생활소음 줄이기 관심과 실천 의지 부족,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음 민원 및 분쟁 증가
- 소음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실무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소음 저감 어려움

□ 개선방향

- 시민·언론과 함께 「조용하고 편안한 도시공간, 정온한 도시 서울 조성」에 사회적 참여 분위기 확산
 - 시민과 밀접한 대중매체 활용 홍보 추진
 - 오프라인 홍보와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홍보 병행
 - 전광판, 홈페이지 등 시정매체를 통한 생활소음 줄이기 홍보

□ 추진계획

- 유아·청소년 대상 '환이랑 경이랑' 소음저감 실천교육 실시
- 소음에 대한 시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
 -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대책 보완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
- 공공장소 정온한 분위기 조성 운동
 - 지하철, 버스, 음식점 등에서 조용한 대화 등 에티켓 홍보
 - 개인음향기기 사용 자제, 헤드셋 이용 등
- 소음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, 안내책자, 인터넷 홍보 강화
- 소음발생 사업장 관계자 대상 소음관리 교육 강화
 - 소음발생시설 및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, 제도 준수사항 등
 - 소음분야 관계자 교육, 견학장소로 활용하여 우수사례 전파
- 교육·종교계 생활소음 줄이기 실천방안 및 홍보 강화
- 정온한 생활환경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



◆ 시민과 함께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

- ◆ 시민과 함께 휴식·소통·공감의 오픈 공간을 활용,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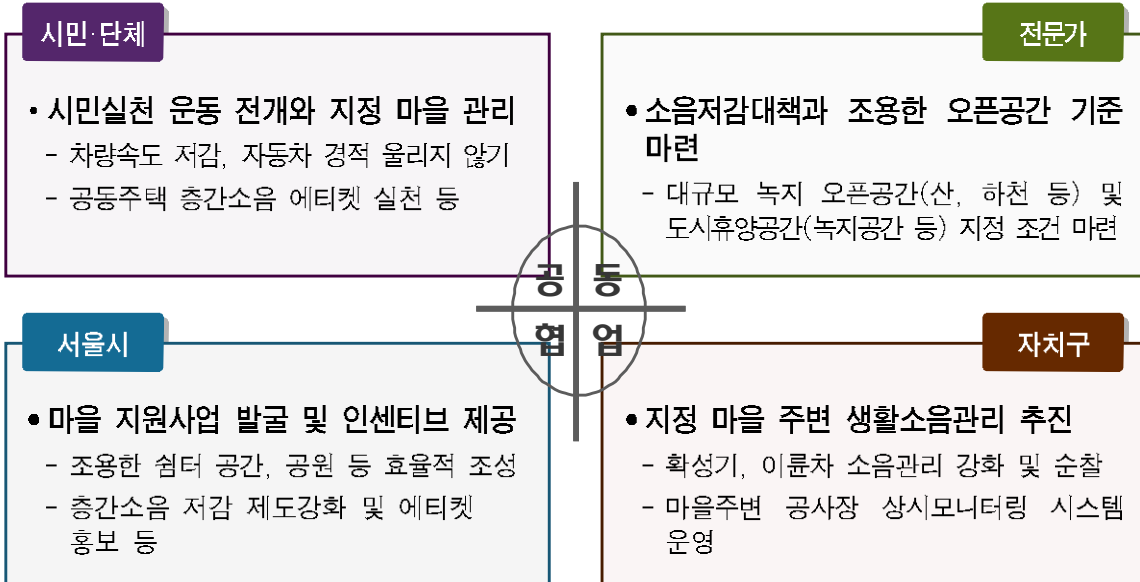
※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→ 조용한 열린공간 공유 + 소음저감 공동체 활용 실천

□ 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 만들기 시민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

○ 녹색서울시민실천사업, 마을공동체 사업 등과 연계

- 베를린 Nauener Park, 후쿠오카 소리 100선 제정 등 해외사례 연구

○ 시민, 전문가, 서울혁신기획관, 주택건축국, 푸른도시국, 자치구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추진



□ 「삶의 여유가 있는 마을」 마을공동체와 연계 및 확대

